

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70,709,019	14,121,271
일반회계	433,049,448	12,991,483
특별회계	37,659,571	1,129,787
공기업특별회계	35,026,115	1,050,783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0,545,597	616,368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4,480,518	434,416
기타특별회계	2,633,456	79,004
지하수특별회계	273,850	8,216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282,178	38,465
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	1,077,428	32,323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709,88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인건비
- 업무추진비
- 복리후생비